학 회 용

*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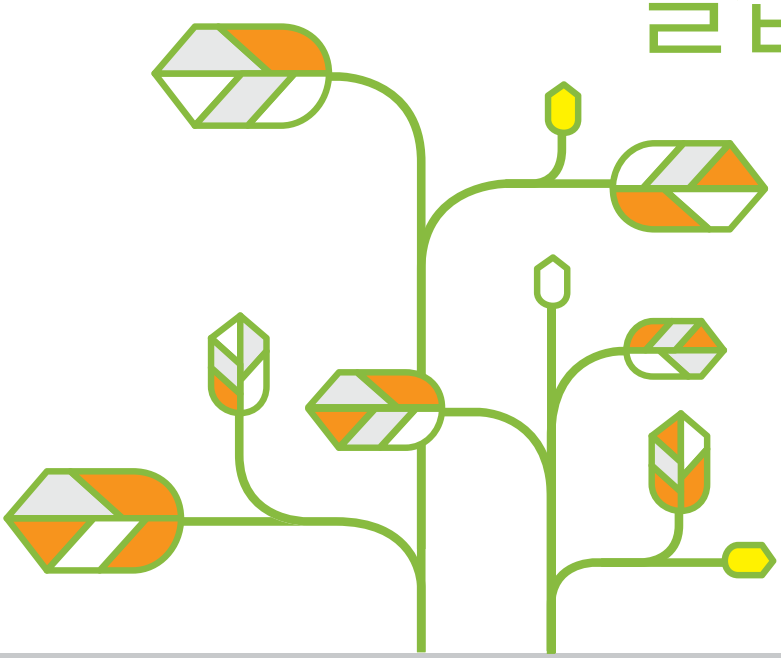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Korean University Council of Research Ethics

*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학 회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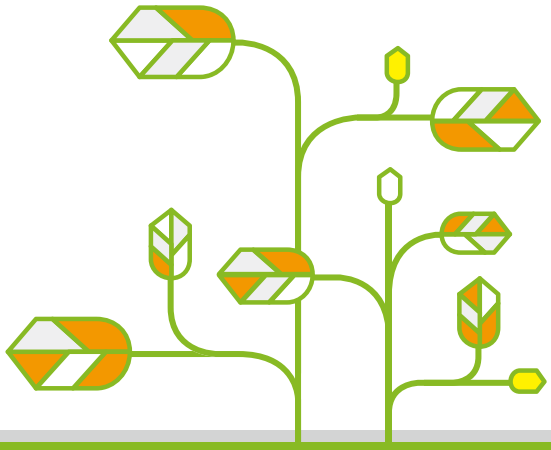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이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에 지원한 『대학 및 학회의 연구윤리 가이드 마련』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원본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CHAPTER

01 서론

1. 이 책의 목적 • 06
2. 이 책의 구성 • 07
3. 추진경과 • 08

CHAPTER

02 학회의 주요 이해관계자

1. 편집인 • 10
2. 저 자 • 14
3. 심사자 • 20

CONTENTS

CHAPTER 03

윤리적 학술출판을 위한 권고사항

1. 동료심사 • 26
2. 이해상충 • 30
3. 논문철회 • 32
4. 저작권 보호 • 34
5. 우려표명 • 36
6. 독자통신 • 36

CHAPTER 04

학회의 연구윤리 검증 관련 권고사항

1.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예방 • 40
2.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 43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후 제재 • 46
4. 생명윤리 • 48
5. 연구기관과 학회 간 협력 • 50

CHAPTER 05

부록

○○학회의 출판 및 연구 윤리 규정(예시 규정) • 54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CHAPTER

01

서론

1. 이 책의 목적
2. 이 책의 구성
3. 추진경과

이 책의 발간 취지

01 이 책은 연구결과를 학술지를 통해 공개하고자 할 때 논문 투고 및 심사, 출판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윤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됨.

02 연구자, 학회 관계자(학술지 편집인, 심사자 및 기타 관계자), 연구기관 등이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술지의 출판윤리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희망함.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Ⅰ. 서론, Ⅱ. 학회의 주요 이해관계자, Ⅲ. 윤리적 학술출판을 위한 권고사항, Ⅳ. 학회의 연구윤리 검증 관련 권고사항, Ⅴ.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성 내용

Ⅱ. 학회의 주요 이해관계자

편집인, 저자, 심사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규범과 연구에 필요한 핵심가치를 정의하였음.

<편집인 자가 체크리스트>, <저자 자가 체크리스트>, <심사자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어 각 주체별로 연구부정행위의 위험성을 검정해 볼 수 있음.

Ⅲ. 윤리적 학술출판을 위한 권고사항

동료심사, 이해상충, 논문철회, 저작권 보호, 우려표명, 독자통신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행동 요령 등이 제시되어 있음.

<출판윤리 체크리스트>가 있어 논문 출판 단계별 실수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Ⅳ. 학회의 연구윤리 검증 관련 권고사항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예방,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후 제재, 생명윤리를 알아보고 연구기관과 학술지 간 협력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다루고 있음.

<연구윤리 체크리스트>를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단계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음.

Ⅴ. 부록

학회가 자율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학회 연구윤리 지침의 예시를 수록하였다.

추진경과

○ 이 책의 내용은 자료 조사 및 연구,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되었음.

시기	주요 추진 내용
2019. 11.	해외 문헌 자료 조사
2019. 12.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자문을 받아 과학기술분야 대표학회 20개 선정 ※ ※ 과총 등록 학회 중 회원수 순으로 30개 선별 → 학문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종 20개 학회 선정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식품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수의학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화학공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기계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2020. 1.	20개 선정 학회 출판 및 연구윤리 규정 실태 조사
2020. 2월 초	20개 선정 학회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 출판 윤리 문제점에 대한 이슈 발굴 ※ 2020. 2. 5(수). 10:30~16:00 진행 (30여 명 참석)
2020. 2.	발굴된 이슈들을 바탕으로 출판물 초고 작성

시기	주요 추진 내용
2020. 2~3.	출판물 초고에 대해 20개 학회의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회의 개최※ 검토의견을 반영한 출판물 초고 수정 ※ 2020. 2. 25(화). 11:00~16:00 진행(10여명 참석)
2020. 3.	2020 연구윤리포럼※에서 출판물 초고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 발표 주요 질문내용과 지적사항 반영하여 출판물 원고 수정 ※ 2020. 3. 27(금) 15:00~15:30 발표
2020. 4.	『과학기술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출판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CHAPTER

02

학회의 주요 이해관계자

1. 편집인
2. 저 자
3. 심사자

* * *
편 집 인

▶ (정의) 편집인이란 논문투고부터 출판 그리고 출판 후 사후 관리의 과정에 관련되는 사람을 의미함.

▶ (편집인의 책임) 편집인은 출판 전 과정과 게재된 출판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짐.*

* 출판물의 내용(논문, 레터, 프로시딩 등)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선정, 출판 과정 등에서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성실히 일할 책임을 의미함.

▶ (편집권 독립) 편집인은 학술지의 내용과 출판의 모든 절차에서 외부인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출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

COPE*
편집인의 지침

1. 편집인은 게재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2. 편집인은 상업적 고려와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3. 편집인은 최대한 투명성과 완전하고 정직한 보고를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4. 편집인은 필요할 때 정정 및 철회 기사를 발행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혐의가 있는 사례를 추적하여 출판된 기록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5. 편집인은 심사와 편집상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추적해야 한다.
6. 편집인은 인간 대상 연구와 동물 연구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7. 전문가 심사자와 저자에게 기대되는 바를 전달해야 한다.
8. 편집인은 편집상의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 책임있는 연구출판: 편집인을 위한 국제표준

대한화학회
편집인의 지침

1. 편집인은 출판을 위해 투고된 모든 원고를 출판을 위해 편견 없이 고려해야 하며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또는 편집자의 개인적 친분과 관계없이 논문의 질로만 판단해야 한다.
2. 편집자는 모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고된 원고를 심사해야 한다.
3. 편집인은 출판을 위한 원고의 수락과 거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편집인은 필요할 때 정정 및 철회 기사를 발행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혐의가 있는 사례를 추적하여 출판된 기록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5. 편집인은 출판을 위해 투고된 원고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지정된 심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인은 저자의 개인성과 지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편집인의 지침

1. 편집자는 기고된 원고의 발행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학자로서 저자의 성실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2. 편집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자에게 원고의 판단을 위탁한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검토자는 제외한다.
3. 제출된 모든 원고의 내용 및 작성자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편집자와 검토자의 신원은 주어진 원고의 평가 중이나 평가 후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편집인의 자가 체크 리스트

권고사항

편집인은 아래의 예시와 같은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논문 출판을 관리할 것을 권고함.

예시

구분	점검사항	질문	예	아니오
접수 단계	심사기준 공지	학회 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을 공지하고 심사자에게 알렸는가?		
	규정준수 확인	투고된 원고가 학회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였는가?		
	표절검사	투고된 원고의 표절검사를 실시하거나, 투고자가 제출한 표절검사 결과를 확인하였는가?		
	이행상충 확인	투고된 원고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연구부정행위 확인	투고된 원고의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		
	윤리승인 확인	투고된 원고에 필요한 연구윤리 심의를 완료했는지 확인하였는가?		
	동료심사자 배정	투고된 원고에 부합하는 동료심사자를 배정하였는가?		
	특정심사자 배제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의 특정 심사자 배제 신청을 확인하였는가?		
심사 과정	편집인 기밀유지	원고내용, 게재가능성, 심사자 등 심사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지하였는가?		
	심사자 기밀유지	동료심사자가 심사 관련 내용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였는가?		
	심사자 이해상충 확인	심사자가 심사과정 중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새로운 심사자를 배정하였는가?		

구분	점검사항	질문	예	아니오
심사 후	심사결과 조정	학회 규정에 따라 심사자 간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 추가 심사자를 선임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부여하였는가?		
	심사결과 통보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적절히 통보하였는가?		
	이의제기 처리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게재 후	연구부정행위 대응	논문에 대해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독자통신 대응	독자통신 타당성을 판단하고 저자로 하여금 적절히 대응하게 하였는가?		

※ 모든 질문항목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함.

* * 저 자

▶ **(중요성)** 저자됨(Authorship)은 저작물에 대한 공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의미함.

▶ **(정의)** 저자란 연구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함.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_저자됨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그리고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 그리고
3. 출판하기 위한 최종본에 대한 승인; 그리고
4.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

Nature와 PN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USA) - 저자됨

1. 연구결과물(Work Products)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
   a. 개념 및 설계(Conception and Design, 예를 들어 가설의 공식화, 연구 아이디어의 정제, 연구 목표의 개발; 또는 실험, 통계, 모델링 또는 분석 접근에 대한 정의) 또는
   b. 데이터의 획득 또는 모델 개발(acquisition of data or development of models, 예: 필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법 또는 장비 개발 등 비정형적인(non-routine) 현장 작업; 연구에 필수적인 기존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의 개발 또는 유의한 수정과 같은 비정형적 실험실 작업; 문헌 검색; 이론적 계산; 및 프로젝트에 특화된 모델링 개발 및 적용) 또는
   c. 데이터의 분석 및 해석(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2. 논문을 작성하거나 편집 수정본(editorial revisions)을 작성한 경우(중요한 지적 내용(critical intellectual content)을 담고 있는 경우)
3.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과 동의

한국통신학회
저자됨

1.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2.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공동 저자 포함, 논문 투고, 논문 수정 등에 있어 모든 공동 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건축학회
저자됨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대한내과학회
저자됨

저자는 1) 개념과 설계, 데이터의 획득 또는 분석과 해석에 상당한 기여, 2) 중요한 지적 내용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하는 것, 3) 출판될 버전의 최종 승인에 기초해야 한다. 저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작성자 수가 6명 이상일 경우 제출된 논문에 대한 각 작성자의 역할 목록이 있어야 한다.

* *

▶ **(저자의 순서)**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자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함.

- 모든 저자의 역할을 기술하고 저자 순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 학문분야에 따라 상이함.

대한화학회 _저자의 순서

공동저자는 발표된 연구에 상당한 과학적 기여를 한 연구자로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해야 한다. 학생의 지도교수(Advisor)가 학생연구를 검토하는 것 이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학생의 논문을 바탕으로 쓴 원고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될 수 있다. 공동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들 사이에 동의를 구한다. 저자의 순서는 원고의 공헌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연구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

대한수학회 _저자의 순서

대한수학회지는 저자를 저자 성명순(Authors' surnames in alphabetical order)으로 작성한다. 저자성명순 저자됨의 사용은 수학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수학의 특별한 성질로 인해, 학회는 수학 논문에서 제1저자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회는 출판의 여러 저자의 상대적 공헌도에 대해 추궁하지 않는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_저자의 순서

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연구 결과만을 정밀하게 제시하고 책임져야 한다. 교신저자는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답변, 각 작성자의 정확한 기여 평가, 제출된 초안에 대한 모든 작성의 승인 및 모든 대응 및 질문 처리에서 모든 저자를 대표해야 한다.

▶ (교신저자)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투고된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짐.

- (예) 연구윤리 심의, 임상시험 등록, 이해상충 보고, 저자 정보 제공, 연구결과에 대한 편집자와 독자의 질문에 대응

▶ (저자의 소속 표기) 저자의 소속기관은 연구 결과를 기관이 소유한다는 것과,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진실성에 대하여 기관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학술지는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을 표시할 것을 권장함.

- 소속기관은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구자가 실제로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우, 연구를 수행한 모든 기관을 소속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연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나 학생이 소속된 교육기관의 경우는 연구를 수행한 기관의 허락을 받아 공동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별도의 장소에 "현재 소속기관"으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함.

▶ (저자 분쟁) 저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먼저 저자 간 자율적 합의를 권장하고 그 후 연구노트, 원고 및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야 함.

* 저자분쟁에 대한 대응은 학술지가 아닌 저자의 소속기관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

- 저자 분쟁 등으로 연구자를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저자로부터 서면 동의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함.

▶ (기여자)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연구에 기여한 사람.

- (예) 연구비 획득, 윤리 심의 통과, 연구자원 제공, 연구에 대한 조언 제공, 단순 업무 수행 등.

▶ (사사표기)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이나 기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그들이 명예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해상충 가능성을 정직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를 내포함.

-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PE)는 교신저자가 사사표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해 알리고 승인서를 받도록 권고함.

Nature의 사사표기* 저자의 순서

사사표기는 간단하게 하되, 익명의 심사자나 편집자 또는 과장된 의견에 사사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 사사표기에 연구비 지원번호나 기여자 번호(Grant and Contributor numbers)를 포함할 수 있다.

* 출처 : https://www.nature.com/nature/for-authors/formatting-guide

국내 사사 표기의 예 저자의 순서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9R1D1A1B07000000)
- 이 논문의 인터뷰 수행을 위해 통역을 해준 XXX에게 감사드린다.
- 영문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No. 2019R1D1A1B07000000)

저자의 자가 체크 리스트

권고사항

저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은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논문 출판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예시

구분	점검사항	질문	예	아니오
투고 전	투고 규정 확인	해당 학회의 저자 자격 지침과 원고 투고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였는가?		
	연구부정행위 확인	투고할 원고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저자 자격 확인	학회 규정에 맞게 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고, 그 수와 순서를 결정하였는가?		
		학회 규정에 맞게 제 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을 정하고, 그 역할에 합의하였는가?		
		모든 저자가 저자 순서에 합의하였는가?		
		모든 저자는 자신의 소속을 바르게 표기하였는가?		
	중복 투고 여부 확인	투고할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관련 법령 준수 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연구 승인을 획득하였는가?		
	이해상충/ 사사표기	학회 규정에 맞게,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을 성실하게 밝혔는가?		

구분	점검사항	질문	예	아니오
심사 과정	요구 대응	편집인 또는 심사자로부터 원고 내용 또는 투고 관련 절차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는가?		
심사 후	원고 수정	편집인 또는 심사자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를 성실히 수정하였는가?		
	이의 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회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편집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가?		
게재 후	독자 통신	논문 출판 후, 독자의 질문, 비평, 의견 등에 성실히 답변하였는가?		

※ 모든 질문항목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함.

* * *
심 사 자

▶ **(정 의)** 심사자(peer Reviewer)란 투고된 논문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논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동료 연구자를 의미함.

▶ **(심사자의 자격)** 심사자는 심사대상 원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이를 편집장에게 밝히고 심사를 중단해야 함.

Royal Society of Chemistry Journals _ 심사자의 자격

1. 심사자로 등록하려면 CV 또는 이력서와 심사자 신청서(reviewer application form)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심사자가 될 수 있다.

(1) 관련 분야에서 박사 수준(또는 동등한 자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현재 활동 중인 연구자

(3) 우리의 저널과 비교할 만한 저널에 동료 심사를 거친 하나 이상의 논문이 있는 경우

※ 참고: https://www.rsc.org/journals-books-databases/journal-authors-reviewers/reviewer-responsibilities/

대한가정의학회
심사자의 자격

1. 편집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지명된 검토자 명단에서 검토자를 선정한다. 제출된 논문에 대해 보다 적절한 검토자가 있는 경우 심사자는 심사원 명부 밖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출된 모든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2명이 검토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가 해당 기사를 요청했다면 이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2. 제출된 물품의 검토에 할당된 검토자는 익명으로 한다.(이중맹심사, double-blind review)
3. 제출된 논문의 작성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는 자는 논문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심사자의 책임) 심사자는 논문의 심사를 수락하기 전, 해당 학술지가 제공한 전문가 심사 범위, 심사 기밀유지 방법, 심사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
- 심사자는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해 반드시 기밀을 유지해야하며, 심사평, 원고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 심사자는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됨.
- 심사자는 저자의 성별, 사상, 직업, 종교, 직위, 정치적 신념, 논문의 출처, 연구비 수혜여부, 상업적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심사자는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함.
- 심사평은 건설적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됨.

대한수학회
심사자의 책임

심사자는 논문심사규정 제6조에 따라 두 달의 심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편집자와 심사자는 심사나 편집 기간 중에 다른 연구자의 연구 내용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만약 심사나 편집 중에 정보를 얻었다면, 그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자나 심사자는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자는 논문을 심사하거나 연구비를 심사할 때 저자의 성별, 젠더, 소속기관(전/현), 직위, 종교적 믿음, 인종과 관계없이 심사해야 한다.

대한건축학회
심사자의 책임

- **성실성**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투고자 존중**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심사자의 자가 체크 리스트

권고사항

심사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은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논문 심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예시

구분	점검사항	질문	예	아니오
심사 수락 전	심사기준 확인	학회의 규정과 심사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전문성 확인	투고된 원고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심사 중	이해상충 확인	저자 또는 논문의 내용이 자신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이해상충 조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장에게 알리고 심사를 중단하였는가?		
	전문성 확인	자신의 전문성이 투고된 원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는가?		
	기밀 유지	심사과정 중 원고내용, 게재 가능성 등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였는가?		
	심사 타당성	심사 기준에 맞게 원고를 심사하였는가?		
	연구윤리	원고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였는가?		

구분	점검사항	질문	예	아니오
심사 후	심사결과 통보	학회 규정에 따라 심사를 판단하고 이를 편집인에게 통보하였는가?		
	심사결과 작성	저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건설적인 방향으로 심사평을 작성하였는가?		

※ 모든 질문항목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함.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CHAPTER

03

윤리적 학술출판을 위한 권고사항

1. 동료심사
2. 이해상충
3. 논문철회
4. 저작권 보호
5. 우려표명
6. 독자통신

01

동료심사 (Peer Review)

▶ (동료심사 중요성) 동료심사는 논문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함.

▶ (동료심사 제도) 학회는 적절한 전문가에 의해 심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갖추어야 함.

* 심사에는 심사자 배정, 심사자 수, 심사수행 방식(공개/비공개), 논문 심사기준 등이 포함됨.

▶ (심사자의 배정) 편집인은 원고 주제에 맞는 적절한 전문가를 배정해야 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심사자는 제외해야 함.

▶ (심사자 제척) 학술지는 투고자가 이해상충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심사자를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 (심사의 기준) 학술지는 심사자가 투고된 원고의 독창성, 학문적 타당성, 학문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제시해야 함.

대한토목학회 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연구논문 및 기술노트가 그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수준인가를 다음과 같은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1. 독창성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① 주제, 내용, 방법이 독창적인 것
② 학계,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③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것
④ 창의성이 큰 계획, 설계, 공사 등에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 경험이 제시되는 것
⑤ 시기적절한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

2. 타당성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심사한다.

① 중요한 문헌이 빠짐없이 인용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② 기존의 기술 및 연구성과와 비교 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이 이루어졌는가?
③ 실험 및 해석의 조건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3. 완성도

원고가 '논문집 투고 규정 및 논문작성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심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주제 및 내용이 시기에 적합한가?
② 목적과 결과의 명확성
③ 기존의 연구, 기술과의 관련성
④ 문자표현의 적절성
⑤ 도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활용성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① 주제 및 내용이 시기에 적합한가?
② 연구, 응용성, 유용성, 발전성이 큰가?
③ 연구, 기술 성과가 실무에서 사용될 가치가 있는가?
④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여 장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가?

심사위원은 4에 따른 심사내용과 함께 현재까지의 논문집에 게재된 연구논문 및 기술노트를 참고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생화학 분자생물학회 심사의 기준

1. 실험의학 및 분자의학적 문제를 다룬다.
2. 내용이 독창적이다.
3. 기술이 논리적이고 결론이 타당하다.
4. 같은 분야의 연구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다.
5. 기술이 명확하고 올바른 영어를 사용했다.
6. 우리 잡지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동료심사 (Peer Review)

▶ (편집인 심사, Desk Review) 편집인은 투고된 원고의 학문적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고 접수 단계에서 원고를 거절할 수 있음.

▶ (심사의 판단) 편집인은 원고 당 2인 이상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심사하게 하고 심사자 간 판정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다른 심사자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음.

한국화학공학회 심사의 판단

1. 심사위원은 분야별 편집위원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장이나 편집위원 중 한 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2. 모든 논문은 3명 이상이 심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편집위원이 이의 게재여부를 추천하며 논평이나 오류정정은 심사 없이 편집위원이 그 게재여부를 추천한다.
3. 심사위원의 명단은 저자 이외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한다.
4.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생화학 분자생물학회 심사의 판단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①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종설(review)은 심사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로 구분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가.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게재한다.

나.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것을 편집위원이 확인한 후 게재한다.

다.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수정된 논문을 다시 심사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심사요지에 밝힌다.
가. 연구 내용이 의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
나. 독창성이 없는 내용이나 다른 연구 논문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다. 연구의 목적이나 결과가 뚜렷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적으로 기술되지 아니한 경우
⑥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 가능" 판정을, 다른 1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이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과 해당 편집위원에 의해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제출된 원고의 작성이 본 EMM 투고세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편집위원이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않는다.

▶ (심사의 이의제기) 저자는 통보 받은 심사결과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편집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저자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인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동료심사 시 기밀유지 위반) 심사자와 편집인이 투고된 원고에 대한 기밀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저자는 이에 대해 학회 측에 제보할 수 있음.
- 심사자(또는 편집인)가 기밀유지 원칙을 어긴 경우 학술지가 이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조사결과 심사자(또는 편집인)가 원고의 개념 또는 내용을 활용한 것이 밝혀진 경우 학회는 심사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학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음.

대한약학회
기밀유지 원칙

연구 및 출판윤리 의심사례로서는 투고논문에 이중게재, 표절, 자료조작, 저작권 침해, 이해충돌 및 기타 윤리적 문제 등과 또한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전용 및 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조속히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다. 관련 조사 및 처리 과정은 연구출판 윤리위원회의 업무 흐름도(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에 따라 진행되도록 한다. 이러한 의심사례에 대한 심사 및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02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 (발생원인) 연구 자체의 본질적 목적보다 연구자 자신의 사적 이익 또는 주변적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

▶ (이해상충의 종류) 재정적, 인적, 학문적, 임상적 이해상충 등이 있음.

① 재정적 이해상충(예시)

-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 인적 이해상충(예시)

-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예: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제 관계 등)
- 심사자가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자 본인과 인적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할 경우

③ 학문적 이해상충(예시)

-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④ 임상적 이해상충(예시)

- 최근 의과학 연구는 급속한 상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 (이해상충의 예방)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투고받기 전 이해상충 관련 서류를 받음.

- 이해상충이 없을 경우, '이해상충 없음' 이라고 표시함.

한국식품과학회
이해상충

이해상충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이 재정적 관계 아니면 저자의 연구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 잠재적 이해상충의 예는 학문적, 개인적, 정치적 관계; 고용관계; 상담 또는 명예, 재정적 연결 예를 들어 주식과 펀딩 소유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록 저자가 이해 상충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밝히는 것이 투명하고 신중한 절차가 될 수 있다. 모든 저자는 어떠한 사실적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식품과학회(FSB)는 독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이해관계 진술은 각 이름별로 밝혀야 한다. :

- 김은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음을 선언한다.
- 이는 음식회사 A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 박은 약학회사 B로부터 연설자 상을 받았고, 음식회사 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 만약 여러 저자가 이해상충이 없다고 선언하면, 이것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김, 이, 박은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 만약 모든 저자가 이해상충이 없다면, 이것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저자들은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03

논문 철회

▶ (원칙) 한번 출판된 논문을 수정, 변경 또는 삭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논문철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정직한 실수, 연구부정행위, 중복출판, 비윤리적인 연구 보고 등이 있을 때 논문철회를 고려해야 함.

- 정직한 실수 : 논문의 중요 데이터나 자료가 정직한 오류로 인하여 잘못되어 연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이 독자가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중복출판 : 허락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 데이터 또는 논문을 게재한 경우.
  - 최초 출판학술지 : 중복 출판 통지를 발행함.
  - 중복 출판학술지 : 해당 논문을 철회하고 철회 이유를 밝힘.

▶ (철회의 절차) 철회 공지문에는 논문의 저자, 제목, 철회 결정자, 철회 사유를 명시하고 학술지 (온라인 또는 인쇄물)에 공지해야 함.

*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사협회(IASTMP)

Royal Society of Chemistry* 논문 철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철회 통지를 고려할 것이다.

- 부정행위(예: 데이터 조작) 또는 정직한 오류(예: 오산 또는 실험 오류)로 인해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조사 결과가 적절한 상호 참조, 허가 또는 정당성 없이 다른 곳에서 발표된 경우(즉, 중복 출판의 경우)
- 출판물이 표절인 경우
- 출판물이 비윤리적 연구에 의한 경우 철회 통지는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며, 해당 논문에 'RETRACTED' 라고 표시한다.

* 참고 : https://www.rsc.org/journals-books-databases/journal-authors-reviewers/processes-policies/

COPE 기준* 논문 철회

다음과 같은 경우 편집자는 출판을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

- 중대한 오류(예: 계산 오류 또는 실험 오류) 또는 위조(예: 데이터) 또는 변조(예: 이미지 조작).
- 표절이 있는 경우.
- 연구결과가 이전에 출판된 출처를 편집자에게 밝히지 않거나, 재출판의 허락이 없었거나 정당성 없이 이전에 다른 곳에 이미 출판된 경우.
- 사용승인 없이 데이터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저작권이 침해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 비윤리적인 연구를 보고한 경우.
- 잘못되거나 조작된 동료심사를 기반으로 논문이 게재된 경우.
- 편집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자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해상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철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가능하면 철회된 기사는 모든 출판 버전과 연결되어야 한다.
- 철회된 기사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목 및 저자를 철회된 논문 제목에 포함 시킴).
- 취소 이유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언어로 설명한다.

다음의 경우 철회 대상이 아니다.

- 저자 분쟁이 있지만 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 연구의 주요 결과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수정으로 오류 또는 우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 편집자가 보기에 이해상충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결과 해석에 있어서 논문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출처 : 한국연구재단. 2019.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p.224.

04

저작권 보호

▶ (학술지의 책임) 학술지는 논문을 출판하고 배포하기 위하여 저자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됨.

-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써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양도할 수 없음.
-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써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술지에 양도할 수 있음.

▶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 (양도) 학술지가 저작권을 양도 받게 되면 저작재산권자로서 자유롭게 논문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음.
- (이용허락) 저작자(저자)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면서 학술지는 논문을 사용, 수익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 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저작권양도의 문제) 저자가 저작권 양도계약에 동의하면 저자의 논문 전부 또는 일부를 영구적으로 학술지에 양도하게 됨. 이로 인해 저자는 자신의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권고사항) 저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방지를 위해 학술지는 저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 받거나 출판권을 설정 받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 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 배포권 · 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예시

Elsevier의 경우 유료제공 논문과 오픈엑세스에 대해 각기 다른 저작권 계약방식을 적용함.

▶ 유료제공 : 저자는 Elsevier에게 출판권 및 배포권(Publishing Rights)을 양도하지만 특약을 통해 저자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내부사용이 가능함.

▶ 오픈엑세스 : 저자는 저작권을 본인이 소유하면서 Elsevier에 배타적사용권(Exclusive license)을 부여함.

05 우려 표명

▶ (정의) 논문에 명백한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논문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편집인은 논문 철회 대신 우려표명 기사를 발표할 수 있음.

▶ (우려표명 예시)

- 논문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
-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06 독자 통신

▶ (정의) 독자가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논평, 질의, 비평 등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편집인의 역할) 해당 저자에게 비평에 대해 회신을 요청하고 무례하거나 부정확하고 중상적인 비평을 걸러내야 함.

▶ (저자의 역할) 독자로부터 받은 비평,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음.

▶ (독자의 역할) 연구의 건설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고 건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함.

윤리적 출판을 위한 체크 리스트

구분	점검사항	질문	예	아니오
동료 심사	심사방식	학회 규정에 맞게 심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편집인 심사	편집인은 질이 현저히 낮은 원고의 경우,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고 데스크 심사를 통해 원고를 거절하였는가?		
이해 상충	이해상충 확인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로부터 이해상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해상충 서약서를 받았는가?		
	이해상충 대응	이해상충 발생 시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논문 철회	철회결정	학회는 철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학회는 학회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이나 생명윤리위반의 경우 철회여부를 절차에 맞게 거쳤는가?		
	철회조치	논문 철회 시, 저자 통보, 학술지 공지 등 관련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저작권 보호	저작권 협약	학회는 학술지의 버전에 맞게 저자와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였는가?		
	저작권 분쟁 대응	저자와 학술지 사이에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저자와의 협약에 따라 적절히 해결하였는가?		
우려 표명	조치 사항	게재된 논문의 문제점, 연구부정행위 의혹 등의 제기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공지하였는가?		
독자 통신	독자통신 접수	편집인은 독자통신에서 논의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저자에게 전달하였는가?		
	대응처리	저자에게 전달된 독자통신에 대해 저자로부터 적절한 응답을 받아 공지하였는가?		

※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함.

Publication Ethics Guidelines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CHAPTER

04

학회의 연구윤리 검증 관련 권고사항

1.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예방
2.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후 제재
4. 생명윤리
5. 연구기관과 학회 간 협력

01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예방

▶ (유형)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제1항)은 연구부정행위를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연구부정행위의 7가지 유형>

순번	구분	내 용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기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예방)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학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야함.

- 표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투고된 원고, 게재될 원고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표절검사 실시해야함.
- 투고자로부터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
-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함.

▶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회는 여러 가지 연구윤리 이슈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고 학회 내의 연구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복투고예방) 원칙적으로 한 저자가 동시에 여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승인이 거절된 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윤리 규정

분자세포생물학회에서는 Ethical guidelines and regulations의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연구사기(Research Fraud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연구사기란 연구의 제안, 성과, 결과보고서, 발표 등에서의 위조, 변조, 표절, 중복출판, 부적절한 저자표시(부적절한 포함 또는 제외)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소견을 위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 변형, 삭제 또는 추가하여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타인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속 출판물에 동일한 생각이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자기 표절 사례도 포함된다.
4) 중복 출판: 동일한 연구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두 번 이상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5) 저자의 부적절한 포함 또는 배제 : (타당한 이유 없이)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에 포함하는 행위.
6) 타인에게 부정한 행위를 제안, 강요 또는 협박하는 행위.
7) 학술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한국정보과학회 윤리 규정

① 논문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 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보자'라 함은 부당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당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당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당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시효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논문이 게재된 날을 의미하며, 동일 논문이 여러 번에 걸쳐 부정행위와 관련된 경우, 가장 최근의 게재일이 시효기산일이 된다.

02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 (제보창구설치) 학회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함.

▶ (검증책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나, 학회에게 제보된 연구부정행위(학회가 직접 인지한 연구부정행위 포함)는 학회가 직접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음.

-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학회는 해당 기관의 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 학회는 제보된 연구부정의혹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저자의 소속기관에 알려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함.
- 학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최종 판정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의혹과 관련된 내용의 기밀을 유지해야함.

한국정보과학회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3장 논문윤리성 검증

제10조(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의 간사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1. 제보내용이 그 자체로 제4조 제1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진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간사 주관 하에 본 학회 사무국에서 담당하되,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를 요청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에 대한 설명
3.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7인의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간사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0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후 재제

▶ (제재조치) 학회는 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철회하고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경고 : 비공개 경고와 공개 경고를 할 수 있는데 비공개 경고의 경우 해당 저자에게만 통보되며 공개 경고는 학술지 홈페이지 또는 학술지 출판물에 공지될 수 있음.
- 회원자격 제한 : 학회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일정기간 논문 투고 및 학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회원자격 박탈 :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안이 엄중할 경우 해당 연구자를 영구히 제명할 수 있음.

※ 단, 제재조치는 학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에서 기관 규정에 맞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대한수학회 연구부정 판정 후 제재

연구윤리위원회가 투표 당시 출석한 위원의 2/3 또는 그 이상이 혐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 중 하나를 시행하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

4.1. 개인 경고 (경고는 서면으로 위반자에게 경고해야 하며, 부총장은 최초의 제보자에게 경고가 발행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4.2 공개 경고 (경고는 협회 뉴스 레터에 게시되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3. 대한수학회 제 11조 2항에 따라 학회로부터의 경고 및 제명

한국정보과학회
연구부정 판정 후
제재

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①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②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③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04

생명 윤리

▶ (연구자)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야함.

▶ (학회) 학회는 연구자가 위의 법을 지키며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또는 실험동물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연구 심의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 (미승인) 학회는 연구자가 IRB 또는 IACUC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고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그 사유와 함께 원고를 반려해야 함.

- 만약 승인이 없이 논문이 게재되었다면 논문을 철회하고 철회 사실을 저자와 관련기관(소속기관, 연구지원기관 등)에 알리고 철회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대한약학회 사람대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연구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에 일치해야 하며 합당한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 동의와 IRB 승인을 받아 이 내용을 원고에 기술하고, 승인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 타당한 이유를 기술한다.

피험자 또는 보호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피험자로부터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수의학회
동물관련 규정

동물 관련 연구

논문에는 연구에 대한 윤리적 배경과 모든 제도적 또는 국가적 윤리위원회 승인을 명시적으로 기술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물연구: 사용된 프로토콜과 절차가 윤리적으로 검토 및 승인되었으며, 승인을 받은 기관의 이름이 논문의 방법론 섹션에 포함되었음을 나타내는 진술

우리는 저자가 동물연구 보고 기준 예를 들어, 연구 설계 및 통계 분석보고, 실험절차, 실험 동물과 축산 등을 위한 ARRIVE 보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를 권장합니다.

저자는 또한 실험 동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련 기관 및 국가 지침의 규정에 따라 실험을 수행했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원고 고려를 위한 동물윤리 기반 기준 : 논문에 아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원고의 출판을 고려한다.

- 인도적 동물 치료에 대한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또는 제도적 제침을 준수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다.
- 기관의 윤리검토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가 존재하는 곳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승인되었다.
- 의뢰인이 소유한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의 경우, 수의학적 치료에 대한 질 높은 기준을 보여주고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쳤다.
- 원고를 수락하기 전에 위의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자는 재료 및 방법에서 윤리검토위원회 승인 절차와 국제, 국가 그리고/또는 제도적 지침을 명시해야 한다.

원고 거부에 대한 동물윤리 기반 기준 : 위에서 언급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고 및 저자가 불필요한 고통, 불편, 아픔 또는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를 포함하는 연구에 대해 편집자는 윤리적 또는 복지 문제를 근거로 원고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05

연구기관과 학회 간의 협력

▶ (협력 필요성) 연구진실성 확보와 윤리적인 연구출판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또는 교육기관)과 학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 (연구기관의 역할)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함.

- 해당 기관의 연구진실성 책임자(또는 사무소)를 두고 그들의 연락처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어 출판된 논문의 신뢰성 또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사례를 학술지에 알려야 함.
- 학술지가 저자됨의 분쟁, 이해상충, 정직한 실수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 또는 용납될 수 없는 출판 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이 출판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의심되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학술지의 역할)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편집장의 연락처 정보를 공개해야함.
- 만약 연구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소속 기관에 알리고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 연구기관(또는 교육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협력하고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기관의 질문에 응답해야 함.
- 연구기관(또는 교육기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시, 직접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해야함.
-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철회 또는 정정 기사를 표명해야함.
- 연구부정행위 사례를 조사하는 기관 및 기타 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함.

학회의 연구윤리 자가 체크 리스트

구분	점검사항	질문	예	아니오
연구 부정행위 예방	규정 공지	학회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정의와 처리 지침을 학회 및 학술지에 공지하였는가?		
	예방 조치	논문 투고 시, 저자로부터 원고에 대한 표절검사를 실시하게하고 표절검사 결과서를 받았는가?		
		모든 저자로부터 연구윤리서약서를 받았는가?		
		교신저자로부터 연구윤리 승인 획득 여부 등을 확인하였는가?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연구윤리위원회 등 검증 관련 기구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운영	연구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연구 부정행위 제재	규정 공지	학회에 연구부정행위 제재 규정이 갖추어져 있고, 연구자에게 공지되었는가?		
	제재 조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연구부정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명 윤리	규정 공지	원고 투고자에게 인간 대상자 보호, 실험동물 보호 등의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할 것을 공지하였는가?		
	준수 확인	원고 투고 시 저자로부터 인간 대상자 보호, 실험동물 보호 등의 관련 심의 승인을 획득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함.

Publication Ethics Guidebook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CHAPTER

05

부록

○○학회의 출판 및 연구 윤리 규정(예시 규정)

01

부록

○○학회의 출판 및 연구 윤리 규정(예시 규정)

<주의 사항>
본 예시 규정은 모든 학문 분야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닙니다. 이에 개별 학회에서 이 예시 규정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에 맞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학회 출판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은 회원의 학술활동과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출판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지켜야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출판윤리

제3조 (편집인) 편집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인은 출판의 원고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인은 출판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선정, 출판 과정 등에서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성실히 일할 책임을 가진다.

3. 편집인은 출판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4. 편집인은 필요할 때 논문을 철회하고 우려표명을 하는 등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5. 편집인은 심사와 편집상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추적해야 한다.
6. 편집인은 인간 대상 연구와 동물 연구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7. 편집인은 원고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자로 선정해야 한다.
8. 편집인은 명확한 심사기준을 심사자와 저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9. 편집인은 편집상의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0. 편집인은 출판을 위해 투고된 원고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지정된 심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심사자)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자는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한다.
3. 심사자는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심사자는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6. 심사자는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심사평은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저자) ①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저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만약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연구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저자의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2.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3.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4.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④ 저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가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 투고를 원고를 제출하고자 할 때 모든 저자의 역할을 기술하고 저자 순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⑤ 교신 저자란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⑥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반드시 소속기관을 표기해야하며, 소속기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관
2. 연구자(학생인 경우)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3.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

제6조 (기여자) ①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논문에 기여한 자는 '사사표기'에 그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② 저자는 기여자에게 논문의 기여자로서 사사표기의 대상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제7조 (논문 심사) ① 학회는 적절한 전문가 심사자를 선정하고 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편집인은 투고된 원고에 대해 학술지와의 적합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편집인은 해당 논문을 가장 잘 심사할 수 있는 최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뢰해야 한다.

③ 학회는 투고자가 이해상충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심사자를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④ 심사자는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당원고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독창성: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주제, 내용, 방법이 독창적이고 학계 및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지 등을 검토
2. 타당성: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검토
3. 완성도: 원고가'논문집 투고 규정 및 논문작성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검토
4. 활용성: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주제 및 내용이 시기에 적합한지, 연구의 유용성과 발전성,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에 전망을 제시하는 정도 등을 검토

⑤ 저자와 심사자는 모두 비공개로 한다.

⑥ 투고된 원고 중에 학문적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고 접수단계에서 거절할 수 있다.

⑦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로 구분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5.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게재한다.
6.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것을 편집인이 확인한 후 게재한다.
7.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수정된 논문을 다시 심사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⑧ 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심사자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⑨ 심사결과는 심사평과 함께 저자에게 통보되며, 저자는 심사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편집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편집인이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논문 철회) ① 한번 출판된 논문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편집인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출판을 철회한다.

1. 중대한 오류 또는 정직한 실수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3. 부당한 중복 게재나 이중출판이 밝혀진 경우
4. 사용승인 없이 데이터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
5. 저작권이 침해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6. IRB, IACUC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심각한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7. 잘못되거나 조작된 동료심사를 기반으로 논문이 게재된 경우
8. 편집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자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해상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③ 철회 공지문에는 논문의 저자, 제목, 철회 결정자, 철회 사유를 명시하고 학술지 (출판물과 온라인판)에 공지해야 한다.

제9조 (이해 상충) 연구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이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재정적 이해상충 :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2. 인적 이해상충 :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예:「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제 관계 등), 심사자가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자 본인과 인적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할 경우 등
3. 학문적 이해상충 :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4. 임상적 이해상충 :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등

제10조 (저작재산권) 저자는 학회에게 논문의 저작재산권(출판권, 배포권 등)을 양도하고, 학회는 동 저작재산권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저자의 기관에서의 사용은 허락한다.

제11조 (우려표명) 학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1. 논문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
4.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12조 (독자통신) ① 학회는 독자들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논평, 질의, 비평 등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독자통신란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인은 독자통신란에 올라온 저자의 비평에 대해 회신을 요청하고 무례하거나 부정확하고 중상적인 비평을 걸러내야 한다.

③ 저자는 독자로부터 받은 비평,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있다.

④ 독자는 연구에 건설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고 건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1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 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4조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① 학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② 논문 투고자는 논문 원고에 대한 표절예방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학회는 매년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수강을 권고해야 한다.

⑤ 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윤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학회의 윤리위원회 또는 편집인에 신고해야 한다.

② 학회의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나, 학회는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제16조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제재) ① 학회는 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17조 (연구대상자의 보호) 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 수행 전 합당한 연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동물실험연구는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실험동물윤리위원회(IACUC)에서 연구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자가 IRB 또는 IACUC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고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원고를 반려한다.

④ 만약 IRB 또는 IACUC 승인 없이 논문이 게재되었다면 이를 철회하고 철회 사실을 저자와 관련기관에 알린다.

*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집필진

·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기획 : 한국연구재단 윤리법무팀

편집인

발행/인쇄일자 : 2020년 5월 21일

발행처 : 한국연구재단

편집/제작 : 로즈앤북스 02-313-6571~2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042-869-6355

비 매 품

이 책의 원문파일(PDF)은 한국연구재단 및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홈페이지(http://kucre.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에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 시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의 허락없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판윤리 길잡이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Korean University Council of Research Ethics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출판윤리 길잡이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이 가지고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를 금하고 있습니다.